2025년 「비제조산업 마케팅 활동 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공고

도내 비제조(ICT, 콘텐츠, 컨설팅 등) 분야 역량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판로 개척을 위한 마케팅 활동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2월 27일 (재)경남테크노파크 원장

1 지원개요

- (지원목적)
- 비제조분야 유망 기업발굴 및 판로확보를 위한 마케팅 지원
- 비제조 기업의 성장으로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
- (지원규모) 4개사 / 10백만원 내외(기업부담금 10% 이상)
- 기업별 지원 규모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
- **(지원기간)** '25. 4월 ~ 10월(6개월 내외)
- (지원내용) 기업이 보유한 아이템(제품, 서비스, 솔루션, 콘텐츠 등) 중, 개발이 완료되어 판매가 가능한 아이템에 대한 마케팅 지원

프로그램명	지원내용	지원한도
전시회 참가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 부스임차료	
홍보영상 제작	○기업·제품 홍보영상 ○유튜브 영상 ○제품 사진 촬영 등	
디자인 개발 및 제작	○ 홍보물 제작 ○ BI·CI 개발 ○ 홈페이지(반응형) 구축 ○ 모바일용 앱 등	10백만원
홍보/광고	○기업/제품/브랜드 관련 TV·PPL ○신문·잡지(온라인 포함) 홍보/광고 ○SNS·검색엔진 마케팅 ○인플루언서 활용 마케팅 ○크라우드펀딩플랫폼 마케팅 등	이내
성능인증	○ 검증, 평가, 시험, 인증	
지재권 취득	○ 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 저작권 등) 취득 - 출원 및 등록관련 절차 대행비용, 컨설팅 비용 지원	

2 신청자격

○ **(지원자격)** 접수마감일 기준 ① ~ ② 모두 충족

구 분	세부기준	비고
① 소 재 지	본사 또는 주사업장 경남도내 소재	개인/법인
② 업 종	주업종*이 비제조산업** 분야인 경우	주업종 코드 확인서(홈택스 출력물)

- * 주업종 기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4조제1항)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표시
 - 주업종코드 확인서 발급: 홈택스 접속 ⇒ 사업자등록사항 및 담당자 안내 ⇒ 화면 마우스 우 클릭후 인쇄하기 ⇒ 인쇄된 출력물에 신청기업 명판 및 직인 날인 후 스캔본 제출
- ** 비제조산업 기준: 표준산업분류코드(KSIC)상 제조업(C코드) 외 업종 중 정보서비스업(J58~63),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70~73),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90)
 - (붙임3) 국세청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 연계표"로 확인

3 평가내용

- (평가단계) 요건검토 → 서면평가*(필요시) → 현장확인 → 발표평가
 - * 신청기업 수가 지원기업 수의 4배 이상일 경우, 사전 서면평가를 통해 3배수(12개사)를 선정(고득점순) 하여 현장확인 및 발표평가 진행
- (평가항목)
- 요건검토: 지원자격 충족 여부 검토
- 서면평가: 신청기업의 기본역량(정량) 및 아이템의 차별성, 지원의 시급성, 지역경제 효과성(정성)에 대한 서면평가

<서면평가 항목>

구분	제출서류	평가항목	배점
저라면기		(성장성) 매출액 증가율: '22년 대비 '23년 매출액 증가율	10점
	재무제표	(수익성) '23년 매출액영업이익률: 영업이익 / 매출액 × 100%	10점
정량평가		(안정성) '23년 부채비율: 부채총액 / 자본총액 × 100%	10점
(50점)		(근로자수 증가율) ('24. 12월말 고용보험가입자수 - '23.12월말	20점
	가입자명부	고용보험가입자수) / '23.12월말 고용보험가입자수 × 100	200
		(사업 아이템의 차별성과 성장가능성) 홍보를 추진하고자 하는 아이템이	20점
		기존 시장에서 차별성을 가지며, 사업성과 성장가능성이 있는지 평가	200
정성평가		(지원 필요성 및 시급성) 사업추진이 시급하고, 지원이 필요	20점
(50점)		한지 평가	200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기여도) 청년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10점
		활성화를 위한 기여 가능성 평가	10 🗖
우대가점	가점	이노비즈(1점), 벤처기업(1점), 창업기업(1점), 여성기업(1점)	최대5점
	증빙자료	최근 3년 내 정부·지자체 주관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1점)	- 기네2급

※ 2023년 이후 설립기업 및 간편장부 대상자 정량평가(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산출 어려움을 고려 최 소점수인 5점 부여

- 현장확인: 사업신청서 및 내용의 사실 여부 등 확인을 위한 현장 방문
- 발표평가: 기업에서 제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발표 및 질의응답 <발표평가 항목>

사업신청서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I. 기업현황	성장가능성	사업수행을 위한 필요역량 확보 수준지원사업을 통한 기업의 지속성장 가능성	20점
Π. 사업계획	지원의 필요성	마케팅 아이템의 차별성 및 경쟁력지원과제의 필요성과 시급성	20점
	목표 적절성 및 실행 가능성	 목표설정의 적절성 및 문제해결 연계성 프로그램별 실행계획과 연계된 추진전략의 차별성 추진 프로세스의 체계성 및 단계별 실행 구체성 일정 수립의 구체성 및 실행가능성 예상되는 사업 리스크 식별 및 대응 전략의 현실성 	40점
	예산 활용 계획의 타당성	•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합리성	10점
皿. 기대효과	사업 효과성	 사업 수행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가능성 매출 증가 및 신규 시장 확장 가능성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기여도 	10점
합계			100점

4 추진일정

모집공고		
경남도, 경남TP		
'25.2.27. ~ 3.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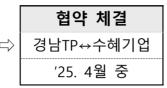
요건검토경남TP

~ '25.3.18.

서면평가(필요시)⇒ 평가위원회

'25.3.20.

	발표평가	
\Rightarrow	평가위원회	١
	′25.3.27.	





	최종평가
\	수혜기업
	'25.11월 초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 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5 신청방법

- **(공고기간)** 2025. 2. 27.(목) ~ 2025. 3. 14.(금)
- (접수기간) <u>2025. 2. 27.(목)</u> ~ <u>2025. 3. 14.(금)</u>, 18:00까지
- (재)경남테크노파크 누리집 회원가입 후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 www.gntp.or.kr > 지원사업 > 사업신청 > 해당 공고 선택 >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제출서류 목록	제출부수
필수①	[서식 1] 사업 신청서	1부
필수②	[서식 2]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필수③	[서식 3] 정부지원사업 수혜이력 상세확인서	1부
필수④	[서식 4]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필수⑤	[서식 5] 선정평가 우대가점 신청확인서	1부
필수⑥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필요시)	각 1부
필수⑦	주업종코드 확인서	1부
필수®	<고용자료>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23년 12월 말 기준 1부, '24년 12월 말 기준 1부	총 2부
필수⑨	<재무자료> - '22~23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본) - '24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	각 1부
필수⑩	<예산수립 증빙자료>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각 1부
선택⑪	<기업현황 자료> 우대가점 증빙 및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등	각 1부

○ (문 의 처) 문희라 선임(☎ 055-259-3636, moon@gntp.or.kr)

6 유의사항 및 지원제외 대상

□ 유의사항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지원 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 접수된 서류는 신청 기간 이후 신청기업 요청에 따라 임의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음
- 접수마감일 기준 2024년 매출은 아직 국세청에서 확인 불가하기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2023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함
- 제출된 서류가 허위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취소 및 협약해지 될 수 있음
- 부가세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기업이 부담하여야 하며, 지원금액과 기업부담금을 합한 총사업비는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임
- 정부 및 유관기관과 동일 또는 유사사업 중복지원 불가
- 중복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지원과제의 지원금 환수 및 제재 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정부 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지역 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및 경남테크노파크 기업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름

□ 지원제외 대상

- 제출기한 경과, 제출서류의 미비 또는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 ㅇ 지원 기간에 경상남도 이외 지역으로 본사 또는 사업장이 이전한 경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수관계인, 자회사 또는 계열사와 공급기관(업) 참여 불가(인적 물적 구분이 곤란한 기업 간 또는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간 포함)
- 동일제품 또는 내용으로 정부 및 지방비 지원을 받거나 진행 중인 경우(중복지원)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기업의 부도,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파산·회생 절차·개인회생,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부채비율 1,000% 이상 등)이 인정되는 경우 등
- 사업에 참여하는 신청기업 및 대표자,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해당하는 경우
- ㅇ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